

『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정희 의원 외 11명

2. 제안 이유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으로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, 참여·서명방법 및 절차, 제도 홍보 의무 등이 부여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 등록 및 공개 사항 신설(안 제2조제3항)
- 조문명 변경(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 등 → 주민조례청구서 등)(안 제4조)
-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선정대표자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)
-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기간 10일간으로 명시(안 제8조제2항)
-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 제출토록 규정(안 제10조제1항)
- 보정기간을 대표자가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규정(안 제11조)
- 수리·각하·결정 통지,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 ~ 제13조)
-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- 부서검토 : 총무과 의견제출(붙임)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◆ 상위법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◆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홍보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,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상위법에서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.
- ◆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이 입법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